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노99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KY(기소), AD(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정2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푸드시스템(이하 '○○푸드시스템'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일자리창출지원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AF상자인 소속 근로자 H, I로 하여금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종합유통(이하 '○○종합유통'이라 한다)의 식자재 배달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사실AE, 이는 도시락 배달업을 하는 ○○푸드시스템이 ○○종합유통의 식자재 배달차량을 빌려 ○○푸드시스템의 도시락 배달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신 위 차량으로 ○○종합유통의 식자재 배달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 사이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것으로 위 근로자들은 소속 회사인 ○○푸드시스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 식자재 배달 업무는 위 근로자들이 ○○푸드시스템 출근시간 전에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받고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400,000원(국비 75%, 시비 25%)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원심판결 제2쪽 제13, 14행)을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400,000원(국비 75%, 시비 25%)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00,000원 상당(위 400,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로, 제2항 중 "부정한 방법으로 8,456,000원의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부분(원심판결 제3쪽 제4, 5행)을 "부정한 방법으로 8,45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6,342,000원 상당(위 8,456,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푸드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2014. 2. 7. 피해자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400,000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H, I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2014. 6. 9.부터 2014. 12. 29.까지 피해자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합계 8,45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과 I가 ○○푸드시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전 6:30부터 10:30까지 ○○종합유통의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제 아래, ㉠ H과 I는 자신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08:00~17:00) 내에 자신들의 소속회사 아닌 ○○종합유통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점, ㉡ ○○푸드시스템이 H과 I에게 위 배달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푸드시스템이 ○○종합유통의 차량을 빌려 쓴 대가로 ○○푸드시스템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종합유통이 지급한 것과 차이가 없는 점, ㉢ I의 출퇴근카드를 보면 06:00에 출근하여 15:00에 퇴근한 일자가 많았던 바, 그 당시 I가 ○○푸드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기본급에는 ○○종합유통에서 한 근무시간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점, ㉣ ○○종합유통의 운영형태, 사무소의 위치, 인적구성, 주된 거래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과 I에게 ○○푸드시스템의 업무가 아닌 ○○종합유통의 식자재 배달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H과 I가 전적으로 ○○푸드시스템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 및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관례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및 보조금 개관

이 사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육성하고, 수익구조 창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배정되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 중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한 후 관련 법령상의 제반 절차 예컨대 참여자가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에 해당하는 참여근로자를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하였는지 여부 심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합산한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운영할 의무 및 사업수익금을 당해 사업의 유지비용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유사사업단체에 대한 기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국비 75%, 시비 25%를 재원으로 하며, 참여자가 매월 보조금 지

급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 전월 보조금의 집행 내역, 참여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내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인지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및 임금 체불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는 위 보조금을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 내용

(1) H은 2014. 4. 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약 20일간 ○○푸드시스템에서 AG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고, ○○푸드시스템의 직원이었던 I는 H이 퇴사한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차량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2) H, I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하루 총 8시간(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는데, 위 H, I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 피고인의 지시로 오전 6시 30분경 또는 7시경에 출근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종합유통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한 뒤 오전 10시 30분경에 ○○푸드시스템 사업장에 도착하여 본래의 도시락 배달 업무를 한 후 오후 17시경에 퇴근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H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I가 오전 6시 내지 8시부터 오후 15시 내지 17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각 출근카드(이하 '이 사건 출근카드'라고 한다)를 첨부·제출하였다.

다) 보조금의 지급

(1) ㉠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참여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이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것)에 해당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부정수급'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 약정해지, 지원금삭감, 부정수급액 환수, 현지지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기초로 울산시 남구와 ○○푸드시스템 사이에 작성된 2014. 5. 28.자 이 사건 사업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푸드시스템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울산시 남구는 참여근로자가 위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인원 수만큼 지원인원 및 그에 따른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으며(제11조 제7항), 그 밖에 위 시행지침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미지급 조치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카드를 기초로 위 H, I가 근무시간 동안 ○○푸드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H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2014. 5. 9. 696,000원, 2014. 6. 9. 168,000원 등 합계 864,000원을, I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2014. 6. 9.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합계 7,592,000원(949,000원 × 8개월분)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기초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그 소속 근로자인 H, I로 하여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인 ○○푸드시스템과 그 지원 대상이 아닌 ○○종합유통의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무상황부와 출근카드 등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써 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위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에 관한 사실을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조금과 울산시 보조금 합계 8,456,000원을 편취 및 부정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우선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약정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내역, 실제 이용 현황, 차량을 ○○푸드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피고인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의 관계, ○○종합유통으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회사의 관계자인 AB 등은 수사기관에서 ○○종합유통의 대표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년 초순경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이 사건 차량에는 ○○푸드시스템의 상호만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이 사건 출근카드나 피고인이 제출한 보조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

과는 달리 위 근로자들이 ○○푸드시스템에만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사업장인 ○○종합유통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설령 그것이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해당 근무시간에 ○○종합유통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거나 적어도 ○○종합유통의 업무와 ○○푸드시스템의 업무를 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속 참여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인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㉔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의 참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그 영업수익을 당해 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게만 엄격하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추구를 주된 사업가치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하는 데에 주된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조금 지급대상인 참여근로자들을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시키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보조금은 여전히 해당 사회적 기업에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근로자들의 근로를 통해 창출된 영업수익은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어 위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침 등에서도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이외의 업무에 근로시키는 행위를 '부정수급'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으로 정하면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여 허용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허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보조금 교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내역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범죄수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미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

 판사 김승현 _____

 판사 백규재 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